[한양증권]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검토필 제2026-94호 (심의일 : 2026.08.31)

상장지수증권(ETN) 핵심설명서, 위험고지 및 거래신청서

(2026.09.01 개정)

※ 본 거래설명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및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이 ETN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ETN 거래의 위험 등을 설명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회사가 의무적으로 교부하는 것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상품 가입 前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증권

□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 **상장지수증권(ETN)**은 기초지수 변동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설계되어 증권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되는 상품입니다.

· **상장지수증권은 '주식'**과 비교 시 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지수에 비하여 더 큰 폭으로 가치가 떨어질 수** 있으며 **단기간 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회사의 신용으로 발행**하며 **만기가 존재하는 상품**으로 만기 이전에 ETN을 발행한 증권회사에 부도, 파산 등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잃을 수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기초자산의 일간수익률의 ±1배를 초과하는 레버리지 또는 인버스의 배수를 수익률로 추구하지만 실제수익률과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인버스 ETN의 경우 기초지수가 상승하는 경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투자위험등급 : 1등급(매우 높은 위험)

당사는 투자위험등급을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6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으며, 본 상품은 원금비보장형 상품으로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6단계 중 **1단계인(매우 높은 위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상담 및 문의 연락처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회사의 콜센터(1588-2145)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hygood.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민원•상담이 빈번한 숙지 필요사항

Q1. 상장지수증권 투자를 시작할 때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나요?

○ 파생 ETN의 매수주문을 위탁하는 때에는 사전에 회사가 정하는 **기본예탁금적용기준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현금 또는 대용증권을 기본예탁금으로 회사에 예탁**하여야 합니다. 또한 **레버리지ETN에 대한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별도의 거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2. 기본예탁금이 기준금액 이하로 떨어졌는데, ETN 거래를 지속할 수 있나요?

○ **상장지수증권(ETN) 보유계좌**의 경우에도 **기본예탁금이 항상 충족되어야 매수가 가능**하고, 매도주문 및 인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Q3. 상장지수증권은 기초자산이 상승한 경우 상장지수증권이 추구하는 투자수익률(기초자산수익률의 ±1배를 초과하는 배수 등)을 달성하나요?

○ 레버리지·인버스 ETN의 경우 1일 이상 투자할 경우 기초자산의 수익률에 배수(레버리지또는 인버스의 배수)를 곱한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투자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Q4. 상장지수증권(ETN)도 상장폐지가 발생할 수 있나요?

○ 발행회사의 자격요건 미달, 기초지수 요건 미달, 유동성공급 능력 부족, 상장규모 및 거래규모 부족, 신고의무 위반, 조기청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만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해당종목의 상장폐지를 실시합니다.**

다만, 발행회사의 부도발생이 아닌 경우 상장폐지를 실시하더라도 ETN 발행회사가 **최종거래일의 IV에 해당하는 금액(투자원금이 아닙니다) 은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

□ 발생가능한 불이익 사항

▶ **기초자산의 가격이 고객의 예상과 다를 경우 단시간에 투자원금 전부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 인버스형 ETN의 경우 기초지수의 변동과 반대방향으로 움직임에 따라서 기초지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초자산이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여도 상장지수증권의 수익률은 오르지 않거나 하락할 수 있습니다.**

○ 레버리지·인버스 ETN의 경우 1일 이상 투자할 경우 기초자산의 수익률에 배수(레버리지 또는 인버스의 배수)를 곱한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투자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기초지수가 선물과 같은 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경우 기초자산인 현물 또는 선물이 크게 변동하지 아니하여도 큰 폭의 롤오버 비용으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롤오버 비용) 선물계약 만기 시 다른 월물로 재투자하는 경우 선물가격간 차이로 발생하는 손실

▶ **중도상환 또는 만기상환 시점의 기초지수가 보합이거나 소폭 상승한 경우에도 각종 비용으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장지수증권 중 증권시장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유동성 부족에 따라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성

가. 기초자산

◉ 상장지수증권의 기초자산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거래소 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장지수증권의 기초자산
(1) 국내외 바스켓지수(5종목) (2) 변동지수(국내, 해외) (3) 국내 주식형 테마지수 (4) 국내외 채권지수 (5) 해외 주가지수 (6) 전략지수 (7) 상품, 통화, 에너지 인프라 (8) (1)~(7) 상품 레버리지·인버스

나. 상장지수증권의 종류

◉ 상장지수증권은 권리유형에 따라 **레버리지 ETN와 인버스 ETN로 구분**됩니다.

구 분	내 용	수익구조
레버리지	투자자산 가격의 **하루 변동률의 1배를 초과하는 배율에 연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품**	**자산가격 1% 상승 시 : (1% * 배율) 상승** **- 자산가격 1% 하락 시 : (1% * 배율) 하락**
인버스	투자자산 가격의 **하루 변동률의 –1배를 초과하는 배율에 연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품**	**- 자산가격 -1% 하락 시 : (1% * 배율) 상승** **- 자산가격 1% 상승 시 : (1% * 배율) 하락**

○ **레버리지·인버스 ETN**의 경우 투자기간만큼의 기초자산 가격 상승분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일간수익률의 상승분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ETN 매도시 투자한 기간 동안의 수익률이 하루변동률의 배율만큼 실현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 기본예탁금 및 거래·호가 단위 등

◉ **(기본예탁금) 상장지수증권은 개인인 고객**이 **상장지수증권**의 거래를 위탁하는 때에는 사전에 회사가 정하는 기본예탁금적용기준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현금 또는 대용증권을 **기본예탁금으로 회사에 예탁**하여야 합니다.

◉**(사전교육 이수) 레버리지ETN**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매매수량 거래단위) 1증권**

◉**(매매수량 거래단위) 5원**

라. 거래시간, 가격제한폭 및 호가의 종류

◉ 매매거래시간 : 9시 ~ 15시 30분

◉ 호가접수시간 : 매매거래시간 개시 30분전 ~ 장종료 시

◉ **(가격제한폭)** 기준가격 ±30% (단, 레버리지 ETN은 그 배율을 곱한 금액)

◉ **(호가의 종류) 지정가, 시장가, 조건부지정가, 최유리지정가, 최우선지정가**(IOC/FOK 가능)

마. 결제일 및 세금

◉ **(결제일) 매매거래가 체결된 날부터 기산하여 3일째 되는 날**(T+2일)

◉ **(분배금) 현금 분배금(배당) 지급 시 배당소득세 부과 (15.4%)**

현금분배금액 × 15.4% (소득세율14% + 주민세율1.4%)

◉ **(매매차익) 국내주식형 ETN : 비과세 / 그 외 ETN : 보유기간과세(배당소득세)부과 (15.4%)**

바. 상장폐지 기준

◉ 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기준은 **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미달하거나 위반할 경우 상장폐지가 진행됩니다.

구 분	내 용
발행회사 자격요건 미달	발행회사의 증권 또는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가 취소되거나 영업 정지로 상장지수증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정상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기초지수 요건 미달	유동성 공급계약을 체결한 LP가 없는 경우 또는 모든 LP가 교체기준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LP와 유동성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유동성공급 능력 부족	발행회사가 유동성공급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유동성공급 계약을 체결한 LP가 없게 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LP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발행 회사가 직접 유동성공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장규모 및 거래규모 부족	ETN 종목의 발행원본액과 지표가치금액이 모두 50억원에 미달하거나, 반기 일평균거래대금이 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규모종목 난립방지를 위해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후다음 반기말에도 동일 기준에 미달하면 상장폐지
신고의무 위반	ETN 발행회사는 ETN 상장 이후 중요한 내용을 투자자가 알 수 있도록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거래소에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상장을 폐지할 수 있음
조기청산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에 기재된 조기청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 수수료 기준

◉ 수수료의 경우 당사 홈페이지-수수료안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ETN 거래 위험고지서 및 거래등록 신청서

※ 상장지수증권은 주식·ETF 등과 거래방법이 거의 유사하나, 만기가 있는 파생결합증권으로서 상품의 성격 및 위험의 종류 등에서 주식·ETF와는 차이가 있는 다른 상품입니다.

1. 상장지수증권은 **증권회사의 신용으로 발행**하며 **만기가 존재**합니다. 만기 이전에 **ETN을 발행한 증권회사에 부도, 파산 등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상장지수증권은 **파생결합증권**으로서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다양하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및 종목정보 등*을 통해 상품구조, 기초자산, 기초지수의 과거가격 추이 등을** 정확히 이해·확인한 후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투자설명서 등은 금감원(http://dart.fss.or.kr/), 거래소(http://etn.krx.co.kr/), 발행증권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손익구조에 따라 **'레버리지형'**은 **기초지수의 변동폭 보다 손실규모가 확대**될 수 있으며, '**인버스형'은 기초지수가 상승하는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손실제한형*' 또한 장내 매매에 따른 손실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 '손실제한'은 최소 상환가격(제비용 차감 전)이 사전에 약정되어, 조기상환 조건 달성 또는 만기상환시 **발행가격 대비 손실이 일정수준으로 제한**된다는 의미임

3. 개인(전문투자자 제외)인 위탁자가 목표로 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1배를 초과한 배율(음의 배율을 포함한다)로 연동하는 **ETN에 대한 매수주문을 위탁하는 때에는 기본예탁금적용기준*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현금 또는 대용증권을 기본예탁금으로 회사에 예탁**하여야 하며, **기본예탁금 미충족시에는 회사가 주문수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1조의3제2항에 따라 기본예탁금적용기준을 정하고 있음

4. 개인*인 위탁자가 목표로 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1배를 초과한 배율(음의 배율을 포함한다)로 연동하는 **ETN을 투자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금융투자교육원**(www.kifin.or.kr)**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전문투자자, 외국인, 투자일임계약 또는 비지정형 금전신탁계약에 따라 거래하려는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는 사전교육 대상에서 제외

5. 상장지수증권의 **가격제한폭은 30%**이나, **레버리지·인버스형은** 원래 가격제한폭에 해당 **레버리지·인버스 배율이 적용되어 가격변동폭이 확대**됩니다. **단, 배수는 ±2배 이내로 하되, 기초자산이 채무증권인 경우에 한해 ±3배까지 가능합니다.**

※ [가격제한폭 예시] ① ±0.01배 ~ ±1배 ETN : 30%
② ±1.01배 ~ ±3배 (레버리지·인버스 ±X배) ETN : (30 * X) %
예) 레버리지·인버스 (±1.25배) ETN : (30 * 1.25) % = 37.5%
레버리지·인버스 (±2배) ETN : (30 * 2) % = 60%
레버리지·인버스 (±3배) ETN : (30 * 3) % = 90%

- 또한, 해외지수 등 기초지수가 상장지수증권의 가격제한폭을 초과하여 상승 또는 하락하거나 일시적으로 수급이 불일치 하는 경우 상장지수증권의 시장가격과 지표가치*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3의 기관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출하는 상장지수증권의 평가가치를 말합니다.

6. **레버리지형·인버스형의 수익률**은 기초자산의 수익률에 배수(레버리지 또는 인버스의 배수)를 곱한 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레버리지 또는 인버스 상품의 일일수익률은 기초자산의 일일수익률의 배수를 곱한 값과 일치하지만, 일일 이상 투자할 경우 해당 상품의 누적수익률은 기초자산 누적수익률에 배수를 곱한 값과 다를 수 있음

7. 상장지수증권의 기초지수가 선물과 같은 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경우 기초자산인 **현물 또는 선물이 크게 변동하지 아니하여도 큰 폭의 롤오버 비용으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롤오버 비용) 선물계약 만기 시 다른 월물로 재투자하는 경우 선물가격간 차이로 발생하는 손실

8. 상장지수증권의 기초지수가 해외 주식·채권·파생상품 등을 포함하는 경우, 해외 시장에 상장된 상품의 특성상 **정보의 접근 및 취득이 용이하지 않거나 정보취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또한, 해당 국가와의 매매제도, 거래시간 차이 등으로 가격 괴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9. **거래소는 투자자의 주의환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ETN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에 대해서 매매체결방법 변경** 또는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종목은 **대용증권에서도 제외**됩니다.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34조의6에 따라 장종료시 실시

간 괴리율이 관리의무 비율의 2배 이상(국내기초자산 6% 이상, 해외기초자산 12% 이상)인 경우 「적출 → 지정예고 → 지정」의 3단계 절차로 지정 또는 호가·매매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경우 지정할 수 있음

**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중 30분 단위 단일가매매 3매매일 적용(해제요건 미충족시 3매매일 단위로 지정기간 및 단일가매매 연장)

- ETN의 시장가격과 실시간 증권당 **지표가치가 달라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표가치에서 이격된 가격으로 투자할 경우 지수의 움직임과 투자성과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여부 결정시 실시간 지표가치와 괴리율 수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발행증권회사나 상장지수증권이 **일정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며, **조기상환 및 평가손실이 확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 발행회사의 인가취소, 자기자본 감소, 신용등급 하락, 기초지수 산출 불가, 발행·거래규모 미달 등

-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에 기재된 조기청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증권회사는 제한적으로 **ETN을 조기청산**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종목은 상장폐지 될 수 있습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 2의5]
- 정규시장 종료시 실시간 증권당 지표가치(장종료시점 iIV)가 전일 대비 80% 이상 하락한 경우
- 장종료시점 iIV가 1,000원 미만인 경우
- 장종료시점 iIV 기준 괴리율이 +100% 이상인 경우
- 기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1. 발행증권회사는 **ETN의 병합·분할을 결정**할 수 있으며, **소유자 명세 작성, 권리배정 등을 위해 해당 증권의 매매거래가 정지** 될 수 있습니다.

12. 중도상환 또는 만기상환 시점의 기초지수가 보합이거나 소폭 상승한 경우에도 **각종 비용으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3. **상장지수증권은 사전에 정한 제비용을 보유기간만큼 일할계산하여 지표가치에서 차감**(후취)합니다.

- 손실제한 상장지수증권의 경우 **발행조건상의 최대·최소 상환가격, 조기상환 가격 등이 제비용을 차감하기 전의 가격**이므로 **투자자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상**

환금액은 발행조건에 명시된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14. 상장지수증권의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 증권시장에서의 매도(이하 "매도 등")로 발생하는 소득(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의 매도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과 환매 또는 분배로 인한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이 경우 매매차익은 합산하되 매매차손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상장지수증권의 과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세무전문가 또는 증권회사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들은 상장지수증권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등에 대해 투자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서술한** 것으로 상장지수증권과 관련된 모든 위험을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세한 내용은 회사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고지 내용은 발행회사의 **투자설명서 내용이나 국내외 관계법규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상장지수증권(ETN) 매매와 관련하여 상기의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위험요소를 충분히 인지하고, 본인의 합리적인 의사판단에 의하여 매매함을 확인합니다.

20 . . .

계좌번호 : 계 좌 명 : (인)

한양증권

파생상품 영업관리자 : (인)